

產業保健醫와 保健管理者



(III)

최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산업보건의 분야가 새로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들의 임무가 한층 더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아울러 직장에 있어서의 노동환경과 작업형태도 변화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산업보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산업보건의의 임무는 중차대하다.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산업보건에 관한 법규,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보건교육 등 넓은 분야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산업보건의들이 직무수행을 해나가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자 본 칼럼을 만든 것이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차례 개정되었고 앞으로도 바뀌게 되는 것이 있겠지만 현실에 입각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매월 연재하여 질의(Q) 응답식(A)으로서 알기 쉽게 집필하여 본 것이다.

(조규상)

● 產業保健 管理體制 ●

Q8 산업보건관리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A. 산업보건관리의 기본관리는 ①작업환경관리, ②작업관리, ③건강관리의 3가지로 되어 있다. 이들 관리가 사업장에서 서로 원활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조직과 기능이 잘 정비되고 보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용주가 사업장에서의 산업보건은 사업수행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산업보건관리책임자, 보

건관리자, 산업보건의들이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또한 산업보건이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생산관리자들이 산업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보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이를 위하여서는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이 중요하다.

산업보건관리의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 **작업환경관리**

작업장에 유해물질이나 인자들이 없으면 전장

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작업환경관리란 작업환경중에 있는 여러 유해요인들을 제거하여 폐적한 작업환경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작업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며, 여기에는 일정한 기술을 가진 작업환경측정기사가 있어야 한다.

작업환경관리는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조치를 하며, 생산설비와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작업방법의 개선과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관리

유해한 물질이나 인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개개의 작업내용에 따라 다르며 같은 내용의 작업에서도 작업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또 작업환경 그 자체도 작업방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요인을 적절히 관리하고, 환경의 악화와 근로자의 영향을 적게 하는 것이 작업관리이며 이것은 건강관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작업관리의 추진으로서는 작업에 따른 유해요인의 발생을 방지하고 폭로를 적게 하도록 하는 적절한 작업방법을 강구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하고, 작업방법의 개선으로 작업의 부과나 자세에 의한 신체에의 악영향을 줄이게 하며 기계사용으로 오는 유해폭로를 적게 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보호구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이 중요한 일이다.

* 건강관리

건강관리는 건강진단을 통하여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상자가 발견되면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여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지도까지 포함한 생활전반에 관한 폭넓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하는데 종전의 건강관리는 이들 건강진단에 의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의 건강관리는 건강진단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환경과 작업과의 관계를 알아내어 건강

장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야 한다. 즉 건강관리를 통하여 작업환경관리와 작업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이들 3자는 서로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장기적 관점에서 중고령자의 직장적응능력을 유지향상시키며, 심신 양면에 걸친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총괄적 관리

총괄적 관리는 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와 보건교육을 종합추진하기 위한 종합적 관리와 산업보건을 사업장내 조직속에서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업무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① 작업장 순시와 보건진단 : 정기 또는 임시로 직장을 순시하여 보건진단을 함으로써 작업장의 유해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예방의학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② 건강장해에 대한 역학적 조사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작업환경적 인자, 작업조건 등 원인을 역학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이의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③ 보건관계 정보관리 :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등 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수집, 평가, 분석하여 보건대책 수립을 위한 계획과 보건교육의 자료에 도움을 준다.

④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협조 : 사업장의 보건사업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계획되어 검토된 후 실천에 옮기게 된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사업장의 모든 간부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해야 하며 결정된 것은 실천에 옮겨야 하는데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는 이 업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⑤ 산업보건교육 : 보건교육은 경영자와 관리자들에 대한 직무연수교육,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교육 등 다양하다. 보건교육은 산업보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여 이것이 태도를 바꾸어 주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교육의 시기와 자료와 교육방법 등을 연구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한다.

⑥ 구급조치와 치료 : 사업장에는 유해위험물들이 산재하여 있고 위험한 공정들이 많으므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긴급시에 대비하여 구급조치의 조직과 재해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과거 사업장 의무실에서는 진료업무를 담당하여 있는데 이것은 일반의료기관과 제휴하여 최소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업장의 산업보건업무는 사업장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서 근로자를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시 사후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활하도록 강구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보건사업은 모든 분야의 협동으로서 성과를 거둘수 있는 것이다.

Q9 사업장에 있어 산업보건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을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게 되어 있다. 이 사람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산업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과 신고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측정과 점검,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시, 작업장의 유해원인조사와 방지대책을 수립하며 보건에 관한 통계를 작성 보관하는 등 보건에 관한 전반사항을 담당한다.

사업주는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밑에 관리감독자들을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임무는 해당업무에 있어서의 기구시설의 보건점검, 보호구 사용에 관한 지도, 산업보건에 관한 보고, 응급조치 등을 맡아보는 것이다.

이상은 생산라인에 있어서의 체제로서 산업보

건에 관한 기술적인 임무는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담당하게 된다. (Q5.를 참고)

이외에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都給)에 의하여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들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Q10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무엇을 하는 기구입니까.

A.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은 관리책임자 1인, 산업보건의 1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위탁한 경우는 대행기관의 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8명 이내와 근로자 대표 1인 및 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9인 이내로 되어 있다.

산업보건위원회는 사업장내의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